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. 11. 28 선고 2016가단345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종결 2017.10.31.

판결선고 2017.11.28.

주 문

- 1.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.4.4.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기초사실

가.피고는 원고의 형으로서 1999.2.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'이 사건 부동산'이라

한다)를 88,500,000원에 매수하였다.

나.원고는 1999.2.22. 피고에게 10,000,000원을 지급하였고, 1999.3.31.경 피고의 부탁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64,6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다.피고는 1999.4.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

라.피고는 원고에게 2001.1.2. 4,268,000원, 2002.11.20. 3,900,000원, 2004.12.28. 4,000,000원, 2005.5.20. 8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갑 제1,3,4,5호증,을 제1,2,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당사자의 주장

가.원고의 주장

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후, 원고는 1999.4.4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5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.4.4.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피고의 주장

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위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.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.

3.판단

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2005.5.20. 피고에게 80,000,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,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80,000,000원을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,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1999.4.4.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6.9.28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 사 김

별 지

부동산의 표시

-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1. 전북 부안군 | <input type="text"/> | 답 | 5028.9㎡ |
| 2. 전북 부안군 | <input type="text"/> | 답 | 4978.1㎡ |

이 상